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 상 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입법예고안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지원 등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4. 11. 12. ~ 12. 12.)

3) 행정규제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4호 중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을 “20”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2024년 12월 31일까지</u>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7. <u>2026년 12월 31일</u>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8. <u>2024년 12월 31일까지</u>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8. <u>2026년 12월 31일</u> ----- ----- ----- ----- ----- ----- -----
9. <u>2024년 12월 31일까지</u>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	9. <u>2027년 12월 31일</u> ----- ----- -----

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
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
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
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
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
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
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
간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
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으로 한다.

<삭 제>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
(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
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

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
하였을 것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
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
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
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② (생 략)

③ 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
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
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
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
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
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생 략)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 마. (생 략)

바. 제1항제9호의 차량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
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
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
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가. (생 략) 나. <u>제1항제9호의2의 차량</u>	3. ----- 가. (현행과 같음) 나. <u>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u> <u>26년 1월 1일부터 2026년</u> <u>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u> <u>이용하는 차량</u>
4. 통행료의 100분의 <u>20: 제1항</u> <u>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u> <u>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u> <u><신 설></u> <u><신 설></u>	4. ----- <u>20</u> 가. <u>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u> <u>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u> <u>제외한다)</u> 나. <u>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u> <u>27년 1월 1일부터 2027년</u> <u>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u> <u>이용하는 차량</u>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83